

법률 제14689호
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2조제1항 중 “1천만원”을 “5천만원”으로 한다.

제233조 중 “2천만원”을 “3천만원”으로 한다.

제234조 중 “2천만원”을 “3천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